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4.(수) 11:00 < 6.5.(목) 조간 > 배포 2025. 6. 4.(수)

에너지 안심동행,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6.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통합 이용가능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7만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 해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도헌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044-203-516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1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개별 수급자의 동절기 집중 사용 필요**에 대응하여 **전체 지원 금액**에 대한 **동절기 이월 제도*는 유지**

* 동절기 이월 제도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시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선택(~'26. 5. 25.까지 가능) 다만, '25. 10. 1. 이후 신청 건은 차년도에 적용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전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25. 6. 9.(월) ~ '25. 12. 31.(수)

□ 사용기간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요금차감	'25. 7. 1. ~ '25. 9. 30.	▸ 전기
동절기	요금차감	'25. 10. 1. ~ '26. 5. 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5. 10. 13. ~ '26.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 방식은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참고2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참고3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문답**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지원

○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2. 금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❶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❷**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❸**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❶**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등의 대리 신청**, ❷**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❸**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3.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또는 신규 신청)**을 요청 드림

○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금액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1인 세대는 해당 없음),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5년도 지원 금액은?

○ 에너지바우처는 ❶**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실물카드 방식) 또는 ❷**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 단,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위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실물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함

*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25년도 지원금액은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 수준임

(단위: 원)

세대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위 금액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5.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는 **'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5년 10월 13일부터 '26년 5월 25일**까지임

○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5. 7. 1. ~ '25. 9. 30.) 및 **동절기**('25. 10. 1. ~ '26. 5. 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 **실물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5. 10. 13. ~ '26. 5. 25.) **내**에 **카드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6.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❶**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❷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❸**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❹**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함

- 올해도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임

- 따라서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 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금액으로 새롭게 지원

7. 2024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의 지원금액을 통합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전체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음

- 수급자는 지원금액 전체에 대해 하절기(7.1~9.30)는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10.1~'26.5.25)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수급자 개별 가구의 동절기 사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도록 **동절기 이월제도는 유지**

* 동절기 이월제도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26. 5. 25.까지 가능) 다만, '25. 10. 1. 이후 신청 건은 차년도에 적용

8.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 '25.12.31.까지 신청 가능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연탄쿠폰 등

- 다만, 별도 **하절기 지원금액***으로 **'25.7.1.부터 '25.9.30**까지 사용 가능

*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5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9.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까지 신청 완료하였는데 변심하여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 **'25.6.26.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을 기존의 "실물카드·요금차감방식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방식**으로 **변경 신청 가능**

○ **'25.6.27.부터는 '25.9.30.까지** 별도로 정해진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하며, 반드시 '25.10.1.이후에는 바우처 사용을 중지 처리해야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음

***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5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 (주의) 만약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환수**